

 신안산대학교	시설관리위원회 규정	규정번호 4-1-14 제정일자 2011. 12. 20. 개정일자 2022. 11. 24. 책임부서/팀·계 사무처
---	-------------------	---

제1조(목적) 시설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사무처장, 부속기관장으로 구성한다. 다만, 총장이 해당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교직원 중에서 위촉한 약간 명으로 5인의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된다.

제3조(위원장)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제4조(직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시설물에 대한 신축·증축·개축·보수에 관한 사항
2. CCTV운영에 관한 사항
3. 시설활용에 관한 사항
4. 시설관리 시행에 관한 평가 및 개선사항
- <2022. 11. 24. 삭제>
5. 기타 총장이 명하는 사항

제5조(운영) ① 위원회는 제4조의 사항중 시설활용 및 평가에 관련된 사항은 본 대학 시설관리 운영에 의하여 심의 처리한다.

② 위원회는 제4조의 사항 중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 연구·실험실 안전관리 규정에 의하여 심의·처리한다.

제6조(회의)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8조(간사)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06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